

# 소 장

원 고 ㅇㅇㅇ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주식회사

○○시 ○○구 ○○길 ○○(우편번호 ○○○-○○○)

대표이사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시 ○○구 ○○동 ○○ 대 ○○○○㎡ 토지상의 높이 ○○.○m, 지하 5층, 지상 10층 및 옥탑 1층의 ○○빌딩건물 신축공사 중 지상 8층, 높이 ○○.○m를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원고 소유인 OO시 OO구 OO동 OO-O 대 OOOm<sup>2</sup> 지상에 19OO.O. OO.부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호) 대 ○○○m²에 경계를 접한 피고 소유인 ○○시 ○○구 ○○동 ○○ 대 ○○ m²의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0층 및 옥탑 1층의 ○○빌딩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지상 8층의 골조공사를 완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 2. 그런데 피고의 ○○빌딩건물은 그 정북방향에서 원고의 위 토지경계와 ○○m를 띄어 건축되고 있는바, 이 거리는 ○○빌딩건물의 지상 9층 이상에 대하여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는 건축법 제61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5조 제1항제3호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 3. 또한, 피고의 ○○빌딩건물의 지상 8층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원고의 위 주택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 ~ 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정도,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 ~ 16:00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는 형편이고, 만일 피고의 ○○빌딩건물이 지상 9층 이상 건축될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 ~ 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2시간 정도에 불과하게 될 것이 예측됩니다.
- 4. 그렇다면 피고가 ○○빌딩건물의 지상 8층, 높이 ○○.○m를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위 건축관련법규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또는 이격거리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택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 ~ 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2시간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시 ○○구 ○○동 ○○ 대 ○○○○㎡ 토지상의 높이 ○○.○m, 지하 5층, 지상 10층 및 옥탑 1층의 ○○빌딩건물 신축공사 중 지상 8층, 높이 ○○.○m를 초과하는 부분의 건축공사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2, 3

1. 갑 제2호증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1. 갑 제3호증

1. 갑 제4호증의 1, 2

1. 갑 제5호증의 1, 2

지적도

각 사진

각 현장도면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소장 부본

1. 송달료납부서

각 1통

1통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sup>™</sup>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용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ul> <li>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214조).</li> <li>인접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受忍)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 47528 판결).</li> </ul>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